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70 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고동진·김종양·성일종

강승규 · 강선영 · 박덕흠

박준태 • 박충권 • 김성원

박성훈 • 이달희 • 최수진

김대식 · 이헌승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함. 하지만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, 고급인력이 첨단산업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(대기업,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)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,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,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(안 제3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6조의2(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편입·전직에 대한 특례 등) ① 병무 청장은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(대기업,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 구개발 업체를 포함한다)를 지정해야 하며,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그 사람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하거나 해당 병역지정업체로의 전문연구요원 전직을 허용할 수 있 다.
 - ②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지정하여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, 전직 및 자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6조의2(병역지정업체 선정 및
	편입・전직에 대한 특례 등)
	① 병무청장은 반도체, 이차전
	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 등 국
	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
	업체 중 병역지정업체(대기업,
	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
	업체를 포함한다)를 지정해야
	하며,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
	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
	우 그 사람을 산업기능요원으
	로 편입하거나 해당 병역지정
	업체로의 전문연구요원 전직을
	허용할 수 있다.
	②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
	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지정하여
	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
	의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
	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, 전직
	및 자격 기준 등에 필요한 사
	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